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관차원의 지원대책 및 검토과제 제언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기존의 담당기관과 관계자들에게만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 각자가 일상 속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과 지식, 그리고 정보를 습득하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체질화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해야 할 활동이 교육 홍보의 차원에서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히 조사연구 하길 바라며 그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

안전문화의 형성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관련 교과과정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집체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의 소방·재난 관련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안전 불감증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속성'과 '계속성'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전 생애적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어릴 때부터 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련 부처별 업무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분석하고 미국 등 선진외국의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제도 및 시스템 등의 소개를 통하여 앞으로 민·관 차원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 | 최태영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1. 현황 및 실태

가. 어린이의 정의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일컬으며, ‘아동’은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 협약에 의해 18세 미만의 자를 지칭한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유치원 8,275개소 54만 1천명, 초등학교는 6,179개교 402만 2천명, 중학교는 2,985개교 201만명, 고등학교는 2,095개교, 176만 2천명이다.

나.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199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1년 1,811명, 2002년 1,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안전원칙」선포 이후 2003년은 1,531명으로 전년대비 9.9%, 2004년은 1,303명으로 전년대비 14.9%나 감소하였다.

사고원인을 보면(2004년) 교통사고(499건, 38.3%), 익사사고(222건, 17.0%), 자살(128건, 9.8%)순이며, 전년에 비해 교통사고(28.8%), 추락사고(19.5%)는 감소하였으나, 익사사고(17.5%)는 증가하였다. OECD 국가별 어린이 사망률을 비교(어린이 10만 명당, 1998-2002년)해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어린이 사망률이 높고 스웨덴이나 영국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실정이다(표 1 참조).

• 표 1 • OECD 국가별 어린이 사망률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미국	한국	멕시코
3.8명	3.8명	5.0명	5.8명	10.2명	14.8명	17.1명

2.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실태

가. 어린이 안전정책 추진체계

(1) 정부 아동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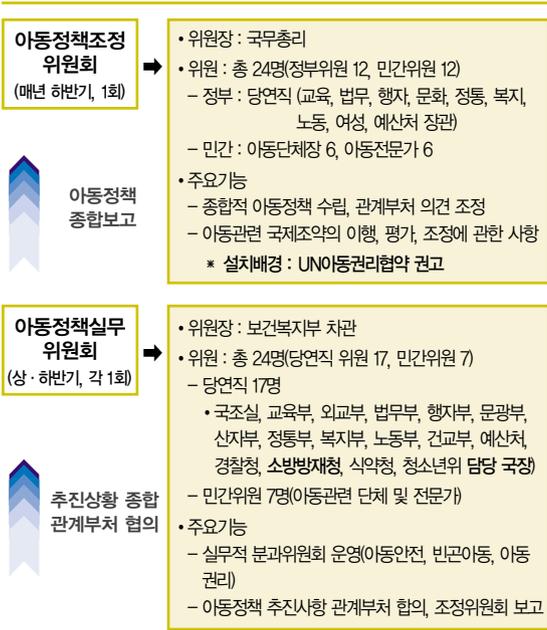
현재 정부의 아동정책은 크게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2002. 5 수립, 5대 분야 22개 과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2003. 6 수립, 12대 분야 59개 과제),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04. 7 수립, 6대 분야 42개 과제) 등 3대 종합대책으로 추진 중이며, 어린이 안전 관련 부처기능 및 조직은 표 2와 같다.

• 표 2 • 어린이 안전 관련 부처기능 및 조직

소관부처	주요 담당업무	소관법령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심서관)	•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총괄·조정, 평가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과정팀)	• 학교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교재 개발·보급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놀이터 안전관리 • 학교내 안전관리전담관리사 배치 및 안전지도교사의 안전교육 연수	• 초·중등교육법 • 아동복지법 • 학교보건법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 경찰청 (교통지도과)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단속 등 안전대책 •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 도로교통법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및 안전문화지원팀)	• 안전문화 운동, 이동안전체험교실, 어린이 안전캠프, 어린이 교통공원 등 운영 • 익사사고 대책, 어린이시설 소방안전관리 등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문화관광부 (관광산업과)	• 유원시설 안전관리	• 청소년기본법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놀이기구 및 놀이용품에 대한 안전 기준 개선 및 사후 관리 • 어린이 용품 안전검사기준 개선 등 안전관리	• 산업표준화법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팀)	•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추진 총괄 • 어린이 기호식품 등 식품관련업소 단속 등	• 약사법 • 식품위생법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	• 주택건설, 건축설계 기준 등 설정 • 반사재 용품 개발 및 보급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 주택법, 건축법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 (보육기획팀)	• 보육시설 안전관리	• 영유아보육법
청소년위원회 (활동기획팀)	•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 청소년활동진흥법
한국소비자보호원	• 어린이 위해정보 수집 및 평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어린이 안전넷 운영	• 소비자보호법

(2)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추진체계 :



[12대 분야 76개 과제]

교통·사회안전 행자부, 건교부, 여성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통학차량대책 건교부, 교육부, 경찰청	익사사고대책 복지부, 산자부, 소방방재청	추락사고 건교부, 산자부, 여성부, 교육부, 청소년위, 소방방재청
이동학대 방지 복지부, 여성부, 교육부, 경찰청, 청소년위	화재·사고대책 소방방재청, 국조실, 산자부, 교육부, 소방원 시무청, 청소년위	불량식품 방지 식약청, 교육부	미아 찾기 복지부, 경찰청
안전교육 교육부, 행자부, 복지부, 여성부, 소방방재청	안전문화운동 소방방재청, 소방원, 홍보처, 청소년위	자치단체 국조실, 행자부, 경찰청, 지자체, 소방방재청	추진체계 국조실, 소방원 시민단체

● 도표 1 ●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추진체계

나.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실태

(1) 학교안전교육 내용 분산 및 비체계적 운영으로 교육효과 저조
안전윤리, 안전의식, 안전지식, 안전행동 실천 및 체험 등에 대한 통합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교육을 미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및 학교안전교육법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체험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미흡하다. 또한 안전교육 과정이 정규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도덕, 체육 등 타 교과 학습의 일부로 실시되고 있다.

(2) 안전교육 담당시간 확보 미흡

안전교육 독립 교과가 없고, 학교장 재량활동 영역 중 범 교과 학습(18개 이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지침에 학교장 재량 또는 특별활동시간을 활용(연간 21~23 시간)하여 안전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3) 어린이 안전전문 교사 및 교육기자재 부족

교원양성대학(교원 및 사범대)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전문가 교육기회가 크게 부족하며, 안전관련 기관·단체 별로 단편적인 내용의 안전교재를 보급하여 체계적·종합적 안전교육 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시 교육내용·방법에 대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검증 시스템 미구축 및 어린이 연령·정서 등을 고려한 안전교육교재 개발 미흡으로 내실 있는 교육 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4) 종합안전 체험시설 부족

일본의 경우 방재체험관 및 소방박물관 등 총 159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안전체험시설은 전국에 1개소(서울시민안전체험관), 교통·소방안전체험시설은 지자체 및 소방관서에서 소규모로 운영(전국 90개소 : 종합 1, 교통 44, 소방 23, 건설안전 7, 지하철 10, 기타 5)되고 있으며, 순회안전교육을 위한 이동안전체험차량이 부족(10개 시·도 14대)하여 이동안전체험 교육요청 쇄도로 인해 체험교육 예약시 1개월 이상 대기해



야 한다. 교통공원, 안전교실 등은 지자체·경찰청·민간단체 등에서 산발적, 소규모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3. 선진외국의 안전교육 제도

가. 미국

1938년경 47개주에서 학교안전교육을 실시(24개주는 별도 교통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각 주마다 독자적인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교육의 노하우가 축적되었다.

연방정부에서 질병예방, 통제국에서 공립학교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보건정책과 프로그램 연구'에 착수(1994년)하여 초등학교의 80.3%가 보건시간을 통하여 사고와 상해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평균 66.3%의 중학교와 71.7%의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학교의 안전교육 주요내용은 사고발생의 위험군, 위험요소, 사고다발유형 등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대처와 예방 기술 및 요령 제시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식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나. 프랑스

1990년대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다. 체험·실습교육에 초점을 두고 중학생에게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합격증을 받도록 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알게 하고 그들이 교통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안전한 행동 양식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3년에는 학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을 법령으로 공포하였다.

이 밖에도 학교 교통안전 교육증(ASSR)과 교통안전면허(BSR)에 관한 법령이 있으며 ASSR 2급은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면허증 취득 시 반드시 필요하다.

다. 영국

영국의 교육과정은 중앙정부 교육과정과 지방정부 교육과정이 혼용되어 학교마다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의 위치에 차이가 나지만, 90% 이상의 학교에서 학교 정규 교육과정 독립교과 또는 다른 교과목과 통합교과로서 안전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교육원(SHEU)을 통해 초·중등학교 학생의 안전보건 교육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실태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있다.

1990년대 안전교육지침서와 각급 학교용 교재를 펴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교육의 목표 및 실행지침을 개발하였다. 민간부문에서도 '왕립사고방지협의회(ROSPA)'가 나서서 중앙정부와 협의 끝에 안전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전국 2만여 개 지부를 둔 '교통안전클럽'을 만들어 3~8세 어린이 안전교육(6개월 단위로 내용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방교육국의 책임 아래 학교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설비, 인원 등을 연구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서를 편찬하여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라. 일본

학교안전에 관한 독립적인 법령은 없으나 학교보건법을 통해 학교 안전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다. 독립된 안전교과목이 없고 크게 교통안전과 재해안전에 대해 중점을 둔 교과서를 만들어 사용하며 모든 소학교는 매년 최소 20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소 학교 : 보건체육과목에서 '부상 예방'
- 중 학교 : 보건체육과의 보건 분야에서 '상해 예방'
- 고등학교 : 보건체육과의 보건 분야 중 '교통안전' 내용 중심으로 지도

마. 호주

호주의 경우 관련 교과목(과학, 기술, 예술, 체육 등)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안전 교육과 직업안전·보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 'The School of the Future Reference Guide'를 학생안전, 학생보건, 학생보호와 지도 등 학교안전 보건교육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바. 스웨덴

1950년 중반 400명의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한 것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0년 초기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를 1/4 수준인 100명 미만으로 저감시켰다.

3E를 어린이 안전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운영하여 개인의 위험유발 행동과 안전경시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정책(Education)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교통클럽(Traffic Club)제도를 도입하여 3~6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6개월에 한 번씩 가정 안전학습을 위한 안전교재 6권을 제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공헌하였으며, 영국과 일본에도 전파하였다. 어린이 카시트 착용하기, 장난감 등 제품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기술 개선 등 어린이를 위한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과 기준,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 기준 등을 제정하고, 자전거 헬멧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4.민·관 차원의 지원대책 및 검토과제 제언

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강화

- (1) 부처·민간단체 및 전문가 합동 어린이 연령 및 정서 등을 감안한 통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우리 청, 교육부, 복지부, 소보원, 관계 전문가 및 단체 등으로 구성
 - 선진 외국의 안전교육 내용분석,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 ※ 교사용(교재, CD 등 시청각 자료, 문제 은행), 학생용(안전학습장, 문제 풀이 등) Package로 개발
- (2) 체험·문제해결 중심의 안전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단계별·수준별 안전 교육 교과서 개발



- 교과서 개발에 따른 교사용 안전교육지도서 개발
- 체험교육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임·만화·놀이 등 시청각 자료 등

- (3) 학교 및 지자체 등의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산간지역(산불, 추락), 해안지역(태풍, 해일, 너울), 도시지역(교통) 등

나. 어린이 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 강화

- (1) 어린이 안전네트워크 민·관 협의체 구축
- 어린이 안전관련 연구·교육·홍보 등 단체를 주축으로 한 어린이 안전네트워크 참여단체 확대
 -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한 다양한 공동협력사업 개발 및 정보공유 확대 : 어린이 안전문제 공동연구,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연구 활동 전개
- (2) 어린이 안전교육·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어린이 시설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 사업 추진

- 어린이 카시트 착용하기 등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및 캠페인 전개 등

(3) 어린이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 추진

- 우리 청과 공동으로 안전교육 정규 교과 편성 범국민운동 추진
- 어린이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 노력 강화

다. 어린이 e-안전교육훈련 프로그램 대폭 보강

(1) 어린이 안전정보 통합 사이트 구축

기존의 다양한 어린이 안전관련 사이트(10개)를 안전정보, 사이버교육, 사고예방요령, 안전단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어린이 안전정보 통합사이트를 구축하고 e-안전교육훈련 포털 개념으로 발전, 다양한 안전체험·실습 기회 제공

(2) 어린이 안전정보 공유 확대방안

- 자연 및 인적재난, 전기, 가스, 화재, 승강기, 도로, 교통, 산업안전 등 어린이 안전관련 정보 DB 구축, 관련 기관·단체 정보 공유

● 기 고 ●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관차원의 지원대책 및 검토과제 제언

-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 On-line상에 공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
- 어린이 안전관리 시범기관, 기업체 등의 관련 노하우 공개 및 수범사례 발굴 전파, 홍보, 포상 등

전국 7개 권역에 1개소씩 건립(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 1개소 당 기준 사업비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라. 어린이 안전문화 운동 확대 강화

(1) 어린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TV(공익, 상업) · 신문 · 전광판 등 활용, 국민 캠페인 전개
-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홍보사업 예산 확보

(2) 다양한 어린이 안전관련 문화행사 개최

- 전국의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생(웅변)대회, 글짓기, 표어 및 포스터, 시 · 수필 공모행사 등 개최 정례화(중앙/ 시도/ 시군구)와 우수작 시상 및 작품집 발간 등 대국민 홍보 및 참여 유도

(3) 전국 소방관서에 어린이 안전위해정보센터 설치 · 운영

- 부모에 대한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정보의 제공 기회 확대
- 익사 · 놀이용품 · 낙상 · 실내안전 · 질식 · 중독 · 화재(화상) · 승강기 · 자동차 안전사고 정보 등

(4) 어린이 안전캠프 및 안전교실 확대 운영

- 중앙119구조대 및 소방학교 주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캠프 개설
- 한국 119소년단 활성화 및 소방관서 어린이 안전교실 확대 운영

(2)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확대(14대→22대)

미 배치(중형 차량, 8t)된 8개 시 · 도의 제작 · 배치를 위한 예산확보 추진

(3) 지방자치단체(소방관서)의 소규모 체험시설 설치 · 운영 확대

- 가족 단위, 유치원 등 단체 안전체험 시 체험 담당자 지정 및 교육
- 소화기 시뮬레이션 세트 및 열 · 연기 체험시설, 안전교육 동영상 상영 시설 안전체험 추진
- 어린이 교통공원, 산업안전체험시설 등 D/B 보완 · 홍보 등

(4) 어린이 안전캠프 및 안전교실 확대 운영

- 중앙119구조대 및 소방학교 주관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캠프 개설
- 한국 119소년단 활성화 및 소방관서 어린이 안전교실 확대 운영

마. 안전교육 체험장 등 확대 설치 · 운영

(1) 권역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을 위한 국가적 예산 투입

